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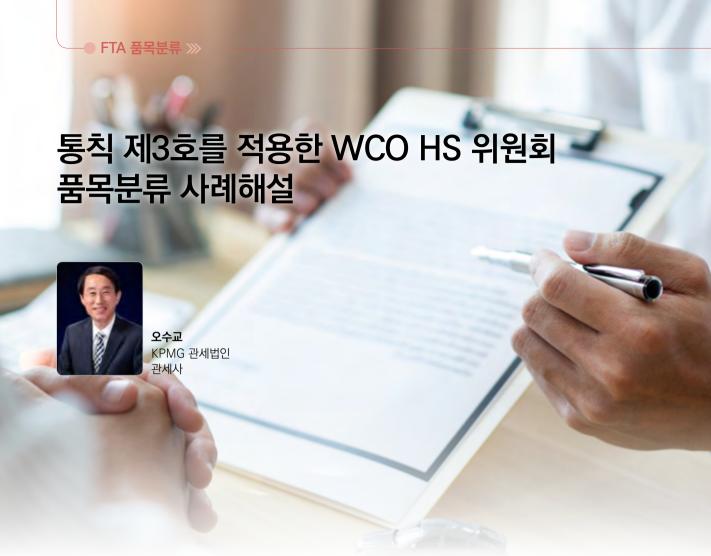




FTA 품목분류

통칙 제3호를 적용한 WCO HS 위원회 품목분류 사례해설

오수교ㅣKPMG 관세법인 관세시



1 서론

이 글은 WCO HS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 중에서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품목분류를 할 때 유념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분류 규정을 정하고, 이 규정은 차례대로 적용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WCO HS 위원회는 ① HS 협약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② HS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대한지침으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분류의견서(classification opinion)를 작성하거나, ③ HS 품목분류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권고를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서 WCO 사무국에

질의할 수 있다.

이 질의를 받은 사무국은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결과 다수의 의견을 얻은 품목 번호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분류 의견서로 작성하여 회원국에 통보한다.

이 분류의견서는 권고의 성격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할 때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통칙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과 쟁점

통칙 제3호는 ① 통칙 제2호나목이나 ②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선 통칙 제2호나목은 ① 서로 다른 물질(sub strate)의 혼합물(mixture)이나 재료(ma terial)의 복합물(combination)에 적용하지만, 혼합물이나 복합물이 특정한 단일 물질이나 재료로 분류하는 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통칙 제3호의 각 목을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사항을 미루어보면 ① 서로 다른 구성요소의 복합물(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이나 세트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에 해당하거나, ② 제16부 주 제3호나 제90류 주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음에 설명하는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 참조), ③ 혼합물이나 복합물이 아니라도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점프볼 (jump ball) 참조]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는 "그 밖의 다른 이유"란,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이든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S 해설서 통칙 제3호가목의 해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는 사례로 ①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 (제8510호), ② 자동차용의 터프트한 양탄자 (제5703호), ③ 틀을 끼우지 않은 항공기용 안전 유리(제7007호)를 예시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들을 통칙 제1호(호의 용어)를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실무에서 굳이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 품목분류의 다툼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물론 자동차용의 터프트한 양탄자를 제8708호 (자동차용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5703 호로 결정하거나 자동차용 백미러를 제8708호 (자동차의 부분품)로 결정하지 않고 제7009호 (백미러를 포함한 유리 거울)로 결정한 이유가 통칙 제1호가 되더라도, 추가로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품명(name)이 종류(class)보다 또는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호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HS 해설서 통칙 제3호나목의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① 성질(nature), ② 용적(bulk), ③ 수량(quantity), ④ 중량(weight), ⑤ 가격(value)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⑥ 그 구성 재료의역할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여섯 가지의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일 되지 않고 물품에 따라 다르므로 실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또한 물품의 기능(function)도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가 실무 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



3

통칙 제3호 적용한 WCO HS 위원회 사례해설

3-1. 통칙 제3호나목 적용 사례

다음은 WCO HS 위원회에서 이 통칙을 적용한 사례이고, 해당 물품은 [그림1]과 같다.

(1) 아동용 캐리어

① 물품설명

신체 구조에 맞게 형태가 갖추어진 방직용 섬유로 만든 좌석(알루미늄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다), 패드를 댄 어깨끈과 엉덩이 부분에 벨트 앵커 포인트·안전장비·분리 가능한 얼굴 패드와 다양한 보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품은 아동 한 명이 앉아 있는 상태로 성인 등에 업어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물품은 최대중량 하중이 20kg이다.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뒷부분 쪽으로 지퍼를 완전히 잠가서 배낭처럼 짊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7호바목), 제3호나목, 제6호를 적용하여 제6307.90호(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로 분류하였다.

HS 해설서 제6307호에서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과 이와 유사한 운반 용구(carrier)"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물품의 구조나 기능으로 보아 제4202호의 배낭보다는 아동의 운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반면에 가방(배낭)은 물건을 넣는 것이고 물건을 넣은 후에는 지퍼를 잠그는 것이 일반 인데, 이 물품은 사람을 운반하고 사용할 때는 지퍼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방과 차이가 있는 물품이라할 수 있다.

제11부 주 제7호바목은 "여러 조각을 봉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은 제11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므로 제6307호로 분류하기 위해 당연하게 적용한 것이다.

(2) 클린룸용 면봉

①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플라스틱)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한쪽 끝은 폴리에스테르 편물의 2개 층을 열 결합하였다. (길이 12.8cm 또는 16.2cm)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제6307.90호(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로 결정한 사례이다.

즉, 청소용으로 폴리에스테르(합성섬유) 편물이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만약 손잡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3926호로 분류한다.









(3) 유리 샤워 부스

① 제품설명

옆 출입구가 있으며 4mm 두께의 강화 안전 유리로 만들어진 판 4개와 아래의 조립 부품을 함께 제공한다.

알루미늄 프레임 섹션 2개, 상단 및 하단 레일 2개, 씰(seal), 바퀴 및 작은 금속 손잡이 2개 조립하고 나면, 미닫이문과 함께 4개의 판이 알루미늄 세미 프레임 샤워 부스를 형성하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885mm x 885mm, 높이는 1850mm이다. 이 모델은 샤워 트레이 (shower tray) 없이 제공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유리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에 따라 제7020.00호(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로 결정한 사례이다.

[그림1]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WCO 사례 물품



쟁점은 이를 알루미늄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다. 샤워 부스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샤워할 때에 물이 다른 곳으로 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유리가 이 역할을 하므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4) 적층 물품

① 물품설명

니켈 박(foil)으로 된 외부의 두 개의 층과 부전 도체인 중합체(폴리올레핀·불소수지 등)와 전도체인 카본블랙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내부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의 각층은 두께가 0.025㎜이고 내부의 층은 두께가 0.3㎜이다. 30㎝×40㎝의 시트에 담겨 제시한다.

이 물품은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과전압이나 고온에 노출되는 배터리·전화기·60V 미만의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리셋 가능한(resettable: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 퓨즈로 사용 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제7506.10호(합금하지 않은 니켈 박)로 결정한 사례이다. 즉, 비록 두께는 얇더라도 전도체인 퓨즈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외부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된 니켈 포일을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보았다.

참고로 절연체인 플라스틱 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3921호로 분류한다. 물론 완성된 형태의 퓨즈는 제8536호에 해당한다. 즉, HS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루프(loop)나 그 밖의 접속수단을 갖춘 짧은 루프선은 이 호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은 퓨즈 선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와 같은 직사각형 물품은 니켈의 제품(제7508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여야한다.

(5) 배터리 작동식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① 제품설명

"스마트 워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크기는 길이 51mm×폭 36mm×두께 10mm이다. 데이터수신과 전송을 할 수 있으며,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터치감응방식 1.6인치(41mm)의 투과반사형 디스플레이·512MB 램·4GB 내부 메모리· 1.2GHz 프로세서·420mAh 배터리·가속도계· 나침반·자이로·GPS가 결합되어 있다. 이 장치는 공개 무선 기술 표준[예: 블루투스 (Bluetooth®) 무선통신규약처럼 개인 영역네트 워크(PAN) 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단파를 단거리(10m까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라디오 송수신기를 가지고 있어, 이 장치를 통하여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셀룰러 네트 워크용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치는 근거리 자기장통신(NFC) 성능을 가지고 있다. 손목에 착용이 가능한 이 장치는 일단 호스트(host) 장치와 한 쌍을 이루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간과 날짜 정보의 표시·알람·스톱워치· 타이머·만보계·수신되는 이메일과 통지에 대한 열람과 사전에 정의된 응답의 발송·호스트 (host) 장치의 음악 플레이어 기능의 작동을 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무선 통신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과제6호에 따라 제8517.62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이 복합기기는 HS 4단위 호 기준으로 최소 8개 정도(제8517호, 제9102호, 제8519호, 제8526호, 제8531호, 제9014호, 제9029호, 제9106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제8517호(음성·영상의 수신용 기기)나 제9102호(손목시계) 중에서 어느 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가리게 되었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다만,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와 다기능 기계는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나, 이 물품은 제9102호(손목시계)와 경합이 되므로 이 주를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것이다.

3-2. 통칙 제3호다목 적용사례

다음은 WCO HS 위원회에서 이 통칙을 적용한 사례이고,해당 물품은 [그림2]와 같다.

(1) 눈금이 매겨진 점적기(點滴器) 튜브

① 제품설명

눈금이 매겨진 점적기 튜브이다. 두 개의 다른 구성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액상의 의약품과 같은 제품을 측정된 복용량씩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튜브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한 WCO 사례 물품



-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로 된 관 모양의 복용량 측정기(0.25째부터 1.0째까지 눈금이 새겨져 있다. 길이는 5.8 cm이고, 양쪽끝의 지름이 다르다(중량 1.1g).
- 가황고무로 된 실린더 모양의 꼭지(중량 2.4g)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4014.90호[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결정한사례이다.

본 제품은 플라스틱 튜브(제3926호)와 고무 꼭지(제4014호)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일정량의 복용량을 공급하는 것은 두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야만 가능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통칙제3호다목을 적용하였다.

(2) 부동액 조제품

① 제품설명

기본적으로 에틸알코올과 물에 소량의 음이온 계면활성제·메칠 에틸 케톤·착색제 및 혼합 (구성에 따라서는 모노 에틸렌글리콜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에 희석하여 방풍 유리의 서리 제거와 청소용으로 사용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제3820.00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본 물품은 음이온계면활성제의 효과로 방풍 유리의 청소용으로 사용하면 제3402호로 분류 할 수 있고, 에틸알코올을 이용하여 서리 제거용 (부동액)으로 사용하면 제3820호로 분류가 가능하다. 두 가지의 역할 중 어느 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였다.

(3)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

① 제품설명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크기: 약 36cm×22cm×27cm, 중량: 약 5.9kg)이다. 탈착이 가능한용기("빵 굽는 팬, bread pan")로 이루어진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용기에서 빵반죽을 위한 재료가 혼합되고 구워진다.

빵 굽는 팬은 탈착식의 반죽용 칼날을 위한 회전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반죽용 칼날은 기계 내부에 장착이 되면 전기모터와 연결하게 되어있다. 용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전열기는 반죽을 만들고, 반죽이 부풀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빵을 굽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하는 데 사용한다.

이 기계는 빵의 반죽과 굽는 용의 자동프로그램과 오로지 반죽만을 위한 자동프로그램이 있다. 오로지 반죽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다른 기계에서 구워져야 하므로 만들어진 반죽이 이 기계로부터 꺼내지게 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다목과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6.60호로 결정한사례이다.

전기모터(전동기)를 장착한 빵 반죽기계는 중량이약 5.9kg이므로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로 제8509호¹에, 전기식의 빵 굽는 기계는 제8516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기계 중에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없으므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²

이 경우는 형식상 제3호나목을 적용할 수 없기에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기에 이 통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¹ 제85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의 중량이 20kg 이하인 것으로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는 제8509호로 분류가 가능하다.

² HS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따르면,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면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한다.

(4) 차량용 긴급구호용 키트

① 제품설명

다음 물품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운반용 가방 1개(제4202호)
- 자동차 배터리용 케이블 1세트(부스터 케이블)(제8544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60cm 길이의 안전벨트(제6307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접착테이프 1개(제5903호)
- 타이어 게이지 1개(제9026호)
- 헤드램프 1개(제8513호)
- 헤드램프용 배터리 3개(제8506호나 제8507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삼각 표지판 1개(제3926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담요 1개(제6301호)
- •케이블 타이 5개(플라스틱 클로저)(제3926호)
- 니트릴 장갑 1쌍(제4015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긴급용 방수 의류 1개(제3926호)

※ 이 위원회에서 개별 구성요소별로 품목번호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가 이해를 돕고자 ()안에 4단위 호를 표시하였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이 세트 물품은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026. 20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쟁점은 우선 통칙 제3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한 물품에 해당 하는지와 다음은 세트 물품이라면 어느 구성 요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세트 물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은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을 정할 수 없음에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타이어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로 결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소매용 세트 물품이 아니라 하여 각각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하면 대략 9개호로 분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한 의견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거래상 세트 물품과 이 표에서 정한 세트 물품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하나의 호로 분류하여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HS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5) 소프트한 하나의 손잡이가 달린 것 플라스틱 점프볼(jump ball)

① 제품설명

지름이 각각 45㎝, 55㎝, 66㎠인 3종류로 제시한다. 사용자의 권장 최대중량은 45㎏, 70㎏, 90㎏이다. 이 점프볼은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의 조정력과 균형감각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점프볼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506.91호로 결정한사례이다.

이 점프볼은 "그 밖의 완구"로 제950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506호의 육체적 운동용품 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물품은 90kg까지의 성인에 견디도록 설계된 점과 피트니스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조자(판매자)가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더 지지를 받게 되어 통칙 제1호와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마지막 호인 제9506호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른 재료로 된 복합물이 아니므로 형식상 제3호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4

결론

통칙 적용과 관련하여 4단위 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칙 제1호와 제3호나목이나 다목을 같이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면 통칙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와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한다)를 기본으로 하되, 이 통칙 제1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용 통칙을 복수로 표기할 때 이해 당사자를 더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일되지 않고 물품에 따라 달리하므로 실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물품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각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다섯 개 사례에서 (1), (2), (4)는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

다만, (3)과 (5)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려야만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품목번호가 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또한, 실무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능한 본질적인 특성을 가릴 수 있는 경우에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기능(function)도 해당하는지 쟁점이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 의견이다.

HS 해설서에서 규정한 역할(role)에 기능이 해당하거나 포함되는지를 다툴 필요가 없이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WCO HS 위원회 사례[예: 배터리 작동식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서도 기능에 따라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